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1064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10647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1567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소송구조)

2.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성

변론종결 2024. 11. 8.

판결선고 2024. 12.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156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648,7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78. 8. 24. 혼인하였다가, 1994. 2. 24.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 B은 2002. 6. 10. 피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2010년 초경부터 월 차임 75만 원이 추가됨)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02. 9.경부터 종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내역의 표시는 별지 1 기재와 같았는데, 2008. 3. 28. 용도변경을 이유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이 2020. 5. 12. 사망하여 망인의 딸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원고 B이 2019. 10.경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0. 12. 29. 원고 B에게 1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24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나88746(본소), 2021나2995(반소))에서 2022. 9. 29. ‘원고 B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4. 23. G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을 76,946,26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06.경 용인시가 시행하는 H사업으로 종전 건물의 상당 부분이 철거되고 8평 정도만 남게 되자 당시 건설업을 하고 있던 원고 A와 원고 B, 망인 사이에 '원고 A가 자신의 비용으로 종전 건물을 철거한 후 잔여 토지에 건물을 신축 내지 증개축하면, 원고 B이 그 건물에서 종전과 같이 식당영업을 하고,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건물이 매각되거나 수용이 되어 원고 B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보상금을 원고들과 망인이 각 1/3씩 나누기'로 합의한 후 원고 A가 종전 건물을 별지 2 기재 건물로 신축 내지 증개축 하였는바, 망인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라 별지 2 기재 건물의 매각대금 76,946,260원의 1/3에 해당하는 각 25,648,7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6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제5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사건에서 원고 B이 영업보상이나 유익비 상환을 주장하였을 뿐 위 합의에 관한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 14호증을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세리, 판사 허서윤, 판사 여인지

별지